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어업용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활용용도의 확대(안 제14조의2)

- 1) 생활용수로 한정되어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용도를 공업 및 농·어업 용수로 확대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기대

나. 유출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4조, 안 별표 7)

-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추진 필요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필요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필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의2에 따른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별표 7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4호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	100	200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종료 신고한 경우		30	50	100

별표 7 제2호러목 위반행위란 러목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위반행위란 머목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제8조의2에 따른 공업용수</u> <u>및 농 · 어업용수</u>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83